

미국 통관행정과 우리 수출기업의 유의사항

이진섭 다함관세법인 관세사

본 글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2014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자료와 미국 CBP 홈페이지 공표 자료를 기초로 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무역용어집(2008)” 및 KOTRA 등 유관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GNI)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무역의존도)이 99.5%, 수출의존도는 50%로 상당히 높다(통계청, 2014). 결국, 무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가인 중국(수출입액의 22%), 미국(수출입액의 11%) 등과 FTA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FTA 발효 5년 차인 미국과의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997억 불(2011년) → 116억 불(2014년), 통계청)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 부수하여 우리 기업들의 미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미국의 통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미국의 통관행정제도

① 통관관련 주요사항

① Informed Compliance / Shared Responsibility / Reasonable Care

미국 관세법은 1930년대 제정된 “The Tariff Act of 1930”을 기본으로 하여 개정 발전되어 오다가, 1993년 「세관현대화법」^①(the Customs Modernization)의 발효로, 미국 통관제도의 근간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 법에는 “informed compliance”과 “shared responsibility” 그리고 “reasonable care”라는 새로운 세 가지 핵심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CBP(Customs Border Protection)에는 관세행정 규정을 관련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informed compliance)할 의무를 부여하고, 수입 관계자들에게는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통해 미국 법규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CBP와 수입관련자들과 책임을 공유(Shared Responsibility)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CBP는 관세행정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Publication)하고 수입자는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준수하며, CBP의 자료요구에 보관 중인 자료를 제출한다. 만약 수입자가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다면,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처벌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 합리적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정기적인 컨설팅, 전문가 의견서 보관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② PTIs(Priority Trade Issues)

관세수입이 많거나, 경제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높은 품목을 미리 선정해 놓고, 이들 품목 위주로 CBP 인력과 장비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투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략 감시항목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물품, Import Safety, 지적 재산권(IPR), Textile / Wearing Apparel, 무역협정 적용 물품 등이 있다.

③ Focused Assessment

통관 이후,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 관세평가 · 특혜관세 · 원산지 · 수입요건 등에 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심사를 수입금액이 큰 기업(연간 1천만 불 이상)을 위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북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제6장

④ ISA(Importer Self Assessment) 프로그램

무역법규 준수 기업들을 위한 '자발적 무역촉진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써 CBP가 요구하는 기준에 대해 스스로가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검증을 받은 기업에는 통관 등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들 기업은 FA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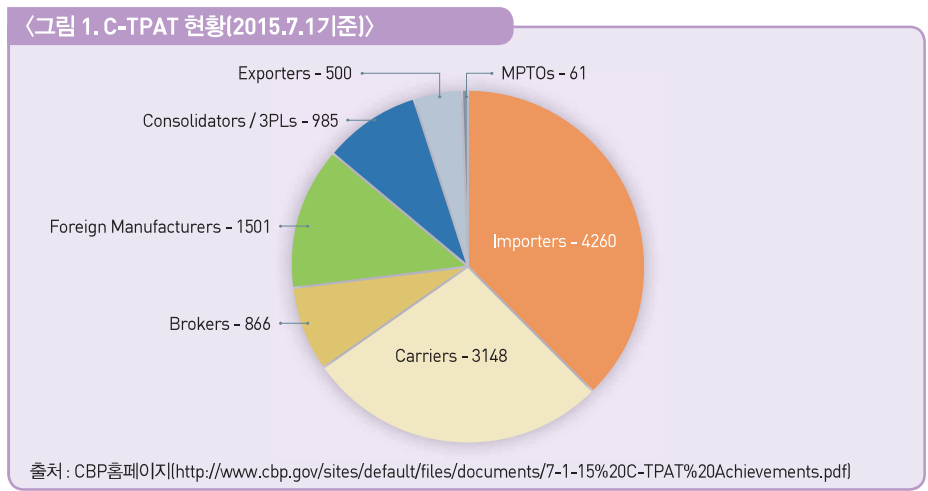
② Trade Security

①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9.11사건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해 선사·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사·수입자·화물터미널 운영업체 등 무역공급망(Supply Chain) 상 당사자들의 법규준수도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업을 법규준수도에 따라 Tier3(최우수등급), Tier2(우수등급), Tier1(보통등급) 3단계로 분류하고, 검사 완화·면제, 우선 화물반출, 검사비용 절감, 벌금경감, 전담관(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을 통한 상담 및 CEE 가입자격 부여 등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

상대적으로 C-TPAT 미 인증업체의 화물은 세관검사 빈도가 높아져 추가비용과 통관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서 국내 AEO 인증이나 미국의 C-TPAT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 CBP 발표 자료(2015.7.1.)에 따르면 11,321개의 무역공급망상 업체가 C-TPAT 인증을 받았다.



② ISF(Import Security Filing) 또는 “10+2”

2009.1.26. 발효된 미 연방항만보안법(the SAFE Port Act of 2006)에 따라 미국으로 출항하는 화물의 정보를 CBP Form 3461을 사용하여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가 CBP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위험 관리를 실시한다. 위반한 경우, 건당 최대 미화 \$5,000의 벌금과 통관보류 및 검사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표 1. Importer Security Filing and Additional Carrier Requirements(10+2)〉

수입자 신고 항목		운송인 신고 항목
미국행 화물(US-bound Cargo)	환적화물(Transit Cargo)	
<p>▶ 선적 24시간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mporter of Record Number 2. Consignee Number 3. Seller (Owner) name/address 4. Buyer (Owner) name/address 5. Ship to Party 6. Manufacturer (Supplier) name / address 7. Country of Origin 8. Commodity HTS-6 <p>▶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단, 도착 24시간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Container Stuffing Location 10. Consolidator(Stuffer) name / address 	<p>▶ 선적 24시간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ooking Party name / address 2. Ship to Party 3. Commodity HTS-6 4. Foreign Port of Unloading 5. Place of Delivery 	<p>▶ 컨테이너 출항 후 48시간 내에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Vessel Stow Plan(컨테이너 적재계획) <p>▶ 메시지 생성 또는 접수 24시간 내에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Container Status Message Data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출처 : CBP홈페이지(<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0%2B2%20presentation.pdf>)

③ 24 Hour Manifest Rule

무역법(Trade of Act of 2002)에 따라 모든 선사는 출항 24시간 전까지 미국 CBP에 적하목록을 송부해야 하고, 이를 통해 CBP는 우범 화물을 선별(Cargo Selectivity)한다.

〈표 2. 미국행 화물 - 미국 CBP(AMS) 적하목록 전송〉

Vessel	24 hours (before lading in foreign) non-bulk; 24 hours before arrival bulk
Air	4 hours prior to arrival. "Wheels up" from NAFT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above the equator
Rail	2 hours prior to arrival at 1st US port
Truck	1 hour non-Free and Secure Trade (FAST) 30 minutes FAST prior to arrival at 1st US port

출처: 미국 CBP "FREQUENTLY ASKED QUESTIONS" Inbound - Transmission Received By CBP in AMS

④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해외 Port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선적화물에 대해, 출발 전 CBP에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고 위험 화물에 대해서는 미리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부산항을 포함하여 전 세계 50여 개 항구에서 CSI가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약 80% 이상이 점검되고 있다.

③ 안전과 무역촉진의 조화

①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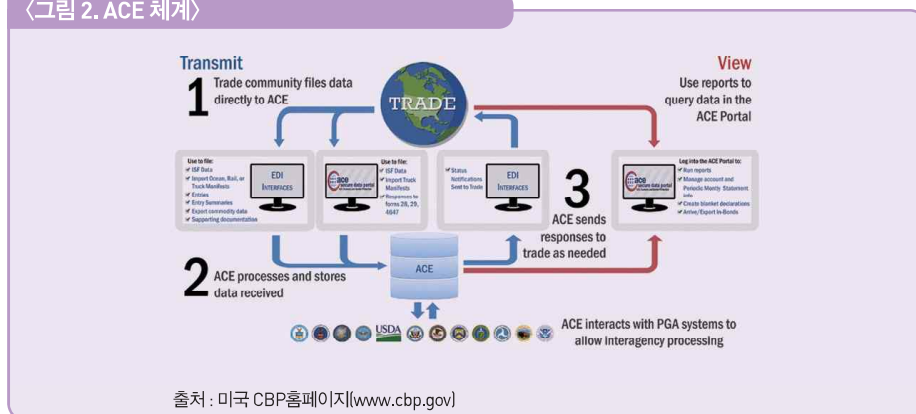
미국의 통관절차는 약 47개 연방기관과 약 200여 개의 수출입 관련 종이 서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절차도 복잡하고 각종 서식도 통일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미 CBP는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ACE)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였고, 미 대통령 행정명령(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에 따라 2016년 12월에는 ACE의 Single Window를 통해 수출입화물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업무체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ACE는 세관의 기존 업무처리시스템(ACS: Automated Commercial System)을 변화된 무역환경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한 것으로서, CBP 이외에 수출입에 관련된 다른 정부기관(PGAs: Partner Government Agencies) 및 무역업계(Trade Community)를 포함하는 단일의 창구(Single Window)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 ACE 체계>



② CE&E(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

미국 CBP가 “21st Century Trade” 전략 중 “Trade Transformation Initiatives”로써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통관지 세관별 수입물품을 심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들의 불편과 중복을 줄이기 위해, 산업 분야별로 심사전담 창구를 지정하였다. 전자·의약·자동차·석유 등 주요 품목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신뢰프로그램(Trusted Trader Program)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수입검사·사후심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3. CE&E 산업분야 및 소재지〉

산업분야	센터 소재지
IT & Consumer Electronics	Los Angeles
Pharmaceutical, Health & Chemicals	New York
Automotive& Aerospace	Detroit
Petroleum, Natural gas & Minerals	Houston
Agriculture & Prepared Products	Miami
Apparel, Footwear & Textiles	San Francisco
Base Metals	Chicago
Consumer Products & Mass Merchandising	Atlanta
Industrial & Manufacturing Materials	Buffalo
Machinery	Laredo

II. 미국의 통관 절차

① 정보 전송 및 화물반입

수입자는 화물이 미국 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사/항공사를 통해 적하목록(Manifest) 및 ISF(Import Security Filing) 정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통관절차(Entry Process)

화물도착 후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Entry(화물반출신고)와 Entry Summary(납세신고)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두 신고가 분리되어 진행되나, 수량할당(Quarter)품목 등의 경우에는 Entry와 Entry Summary가 결합하여 진행된다.

분리방식의 경우에는 'Entry → 화물검사 → 화물 반출'의 과정을 거친 후 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 납부와 함께 Entry Summary를 하나, 결합방식의 경우에는 Entry와 Entry Summary를 동시에 진행한 후 세관의 검토를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거쳐 화물이 반출된다.

이후 본 글에서는 일반적 경우인 분리신고방법을 전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① 화물반출신고(Entry)

① 화물반출 절차

화물이 도착하면 15일 이내에 CBP Form 3461(Entry /Immediate Delivery)을 통해 화물 반출신고를 한다. 신고 시에 적하목록(Entry Manifest, CBP Form 7533),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필요시), 상품 수입허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Entry와 Entry Summary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를 통해 가능하다. ACE는 국내 Uni-pass와 같이 인터넷방식으로 화주들이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② 수수료

H.M.F (Harbor Maintenance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두사용 요금으로 FOB 가격에 0.125%를 부과 • Ocean Shipment 해당, Air Shipment 해당하지 않음. • 동 수수료는 모든 국가에 적용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서 부과하는 Processing Fee로 통관·화물반출에 소요되는 인건비,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 • Ocean/Air Shipment 모두 해당 • 수입가격의 0.3464 % 부과 : 최소 \$25, 최대 \$485 • 한-미 FTA에서 수수료 면제를 규정
화물검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의 화물검사에 대한 수수료로써 수입자 부담원칙·검사수수료는 다양하게 적용

③ Custom Bond

수입자는 반출허가를 받으려면, 통관 후 수입 제세 및 수입요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을 담보할 수 있는 Custom Bond를 CBP에 제출하여야 한다. Bond에는 Single Transaction Bond와 Continuous Bond가 있다.

Single Transaction Bond	Continuous Bo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건별로 제공하는 Bond로 빈도가 낮은 수입자가 사용 • (담보액)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관세, 제세 및 각종 수수료를 합한 가격, 타 기관 요건확인 필요 물품은 신고가격의 3배 • Bond 가액 대비 약 3.5%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 구입으로 1년 동안 해당 수입자의 모든 수입 물품에 적용 가능한 Bond • (담보액) 최소 \$50,000 또는 직전 12개월간 납부한 관세, 제세 및 각종 수수료 합계액 10% 담보 • Bond 가액 대비 약 1% 수수료

② **물품검사 등(EXAMINATION, SAMPLING AND TESTING OF MERCHANDISE)**

CBP에서는 ISF 정보, 적하목록정보, 수입자의 Entry 정보, 수출자 등 정보를 분석(Cargo Selectivity Module)하여 물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검사(examination)는 화물반출신고(Entry)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세관장(Port director)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관세 목적상 물품의 가치 및 물품의 과세 여부
- 적절한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특별표지 또는 Labelling 여부 확인
- 수입 금지품목, 불법 마약 여부 확인
- 상업 송장과 물품의 정확성 여부, 수량의 과부족 여부 확인

〈표 4. Examination 유형〉

검사유형	주요기능
VACIS(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개장 없이 컨테이너 내부를 투시하여 화물검사 • 통상 24 - 72시간 소요
CET(Contraband Enforcement Team)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화물, 밀수, 대량파괴무기 및 금지품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 Customs Examination Station에 화물이 운송된 후 육안 검사
MET(Merchandise Examination Team)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전문관(Import Specialist)에 의해 실시되는 검사 • random에 기초하여 인보이스와 포장명세서를 점검 • 세액, 수입요건, 원산지, 품목분류 및 IPR 등을 심사
USDA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 목재 포장재 · 팔레트 포장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 종류 : Tailgate exam, Intensive exam, X-ray exam 등
FDA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FDA의 검사

③ 납세신고(Entry Summary)

납세신고는 CBP의 관세액 결정, 요건사항 충족 여부 확인 및 통계 목적상 필요한 서류를, 수입자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자 등이 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HS코드, 과세가격, 관세액 등을 결정하고 추정된 관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CBP Form 7501(Consumption Entry)/7502(Warehouse Entry) 등을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사후세액심사(Post Entry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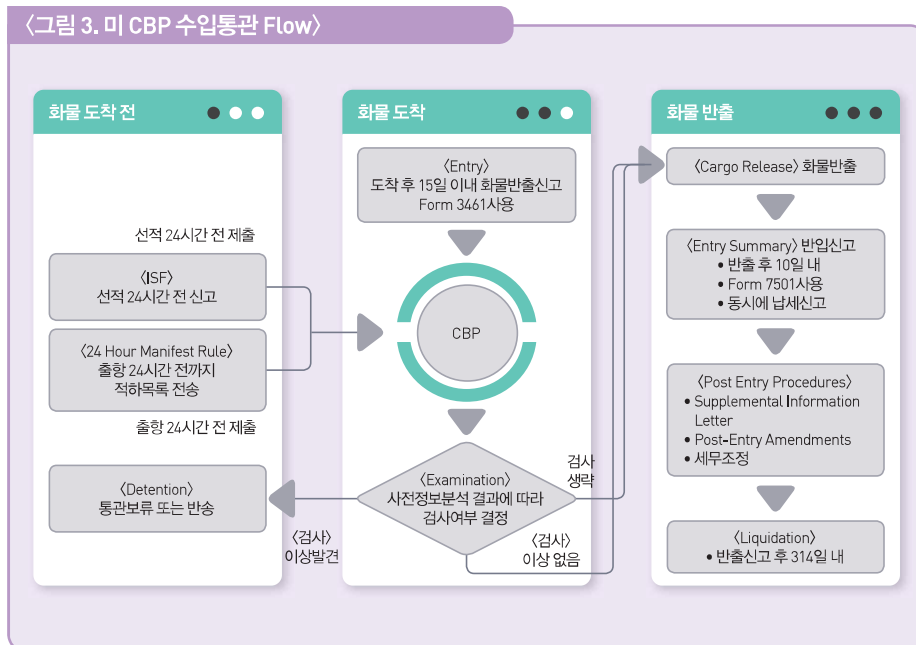
CBP의 수입전문관(Import Specialist)은 신고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FTA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 등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산(Liquidation)

CBP는 심사결과 납부세액과 수입자가 계산하여 납부한 관세를 비교하여 Entry로부터 1년 이내에 과다납부 세액은 환급, 부족세액은 추가징수 한다.

③ 서류보관(Record Keeping)

수입신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 운송서류, 환급 관련 서류 및 관세, 제세 및 수수료 납부 서류 등을 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Ⅲ. 주요 수입물품 요건확인 기관(PGAs)

① 개요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통관과 관련하여서 한-미 FTA 발효로 관세율은 낮아졌지만, 부처별로 규정된 통관 요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Security와 Safety를 명분으로 미국 내에서 비관세장벽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수산물·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써 가장 수입안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기관이다.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따라 강력한 식품안전단속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소재 식품제조시설은 매 짝수년도 마다 FDA에 등록하고 식품의 선적정보를 FDA에 사전에 전송해야 하며, 또한 해외에서 제조되는 식품은 식품안전자율기준(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FDA는 식품수입자들로 하여금 해외생산시설이 미국의 위생 및 식품안전관리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에서 생산을 수행하는지 검증하도록 하는 FSVP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고 2017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 정부·민간기관 및 개인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해외생산시설에 대해 제3자 검증을 할 수 있는 해외식품 안전 제3자 인증제도(ATPA)도 시행될 예정이다.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 미국 식품 수입업체의 해외공급자 검증을 의무화하였고, 검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 미국 식품수입자의 주요의무
 - ① 위험요소 분석(Hazard Analysis) :
 - ② 식품 위험 및 해외공급자 위생활동평가(Evaluate Food Risk and Supplier Performance)
 - ③ 해외공급자 검증(Supplier Verification)
 - ④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 예외 수입식품 : HACCP(위험요소 중점관리기준)대상 식품, 타 규제대상 식품, 연구용 또는 개인 섭취용 식품, 가공 후 재수출 예정 식품 등

출처: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www.globalwindow.org) / 해외시장뉴스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 대응법」(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에 따라 FDA에 제조시설 등록하고, 수입식품 선적 전에 생산지, 선적국가, 반입예정항구명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화물은 4시간 전, 해상화물은 8시간 전에 FDA에 보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다.

〈표 5. 미국 내 농수산 식품류 수입요건 확인 기관〉

구분	FDA	APHIS	FSIS
소속	보건부	농무부	농무부
업무	가공식품 및 농산물	동물성제품, 식물성제품	육류, 가금육류

③ USDA APHIS / FSIS

농수산식품 검역은 품목별로 농림부 소속의 APHIS와 FSIS에서 진행한다.

미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 검역을 통해 브루셀라, 광우병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은 수입된 육류, 사육조류 및 육류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을 한다.

수입통관 시 동물성 제품에 대해서는 Sanitary Certificate, 식물성 제품에 대해서는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요구하며 육류, 사육조류 등은 FSIS Health Certificate를 요구한다.

④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②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부적절한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제품이라 하더라도 FDA에서 관리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과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관리하는 항공기, 해안경비대의 선박, EPA의 살충제 등 다른 연방기관에서 규제하는 품목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CPSC는 소비자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7가지 기본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소비자제품 안전법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2) 연방유해물질법 (FHSA;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 3) 인화성 직물법 (FFA; Flammable Fabrics Act)
- 4) 중독방지 포장법 (PPPA;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 5) 냉장고 안전법 (RSA; Refrigerator Safety Act)
- 6) 수영장 및 스파 안전법(VGBA; Virginia Graeme Baker Pool and Spa Safety Act)
- 7) 아동 휘발유 화상 예방법 (CGBPA; Children's Gasoline Burn Prevention Act)

② 출처 : 해외인증정보시스템[<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128#dt21>]

특히 CPSIA에서는 수입업자 등에 미국 내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해성을 사전에 인증을 받거나 등록된 후 유통시키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규제 및 시험항목은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함유된 납, 3세 이하 유아용품에 대한 small part, 8세 이하 용품 중 끝이 날카로운 물품, 어린이용 완구 등이 있다.

⑤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통신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주요 전기·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EMI)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파 발생장치,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전자기기 및 이들의 부품 등은 FCC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표 6. FCC 인증 구분〉

Cert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도적으로 전자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와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 대상 • FCC 등록 지정 시험소 발행 성적서와 제반서류를 갖추어 FCC 확인 • 반드시 FCC ID를 제품에 부착, 사용자 설명서에 해당 문구 삽입
Declaration of Conformity(D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적용 •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소 또는 MRA에 의해 인정된 시험소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해서, 별도 승인 없이 제품에 FCC ID가 아닌 FCC 마크 부착, 설명서에 해당 문구 삽입
Ver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I 발생 제품 중 전반적으로 제품 Noise Level이 안정되어 통신기거나 타제품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제품이 대상 • FCC 규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제조자가 직접 FCC 문구 부착, 설명서에 해당 문구 삽입
Reg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교환 회선망 등에 직접 접속되는 제품 대상 • 접속에 의한 위해로 공중망 등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된 시험소에서 시험 후 발행된 성적서와 제반서류를 갖추어 FCC의 확인을 받는 인증제도 • FCC 부여 등록번호를 절차에 따라 제품에 부착, 설명서에 해당 문구 삽입

출처: 국제공인시험기관 코스텍(<http://www.kostec.org/foreign/fcc.php>)

⑥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환경안전기준을 정하고 독성물질 및 폐기물질을 관리하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한다.

특히 자동차 또는 엔진, 살충제, 자원보존 및 재생법(R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 따른 폐기물, 독성물질통제법(TSCA: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규율되는 화학물질 등의 수출입은 EPA의 규제대상이다.

IV. 미국 내 통관 보류 현황 및 사례별 시사점

① 한국 농수산물 미 FDA 통관보류현황^③

한국산 식품의 미국 FDA 통관보류가 2010년 이후 식품안전현대화법의 개정에 따른 검역강화로 보류 건수가 증가하였다가 2013년 일시 감소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FDA의 검사강화로 보류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표 7. 미 FDA 한국 농수산물 통관보류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196	403	450	249	309

출처 : aT center Los Angeles, "2014년도 한국 농수산물 미국 FDA 통관보류현황" 2015

2014년 통관보류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료(85건), 멸치(54건), 수산물(58건), 기타 농산물(52건), 과자류(42건) 순이고 위반사유별로 보면 표기누락(271건), 유해물질 함유(79건), 비위생적 제조(68건), Labelling 표기 불량 또는 허위표기(62건), 저산성 식품 미등록(26건) 순이다.

미 FDA는 주요 통관제한 대상품목 및 위반 수출업체 명단을 FDA 홈페이지 'Import Alert'에 공개한다. 또한, Red List에 등재된 기업은 리스트에서 빠지기 어렵고 통관 시마다 정밀검사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사례별 시사점

① 멸치·조기

미 FDA는 2011년 수입경보(Import Alert) 16-74에서 염장·건조·훈제·숙성·절임 등의 가공 전에 내장을 제거할 것을 공표했고, 내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생선에 대해서는 검역 없이 자동억류하였다. 다만, 길이가 5인치 미만인 생선에 대해서는 자동억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4.2월부터는 수입 위생 기준을 강화하여 크기와 관계없이 내장을 전부 제거하거나 HACCP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하였다.

2014년 한국 수출업자와 LA지역 한인 수입업체가 미역과 김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똥을 제거하지 않은 마른 멸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다.

또한, 한국산 조기에 대해 HACCP 증명을 받아 수입 신고하였으나 검사결과 위생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결국 반송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 수입경보(IA: Import Alert) : FDA가 수입물품 중 안전성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시장에 해당 사실을 경보. 대상 물품은 통관 시 자동 억류

③ aT center Los Angeles, "2014년도 한국 농수산물 미국 FDA 통관보류현황" 2015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② 인삼엑기스

캔으로 포장된 인삼엑기스 제품은 LACF(Low Acid Canned Food: 저산성 식품) 해당 물품임에도 HACCP증명서 없이 수입하려다 적발되었다. 저산성식품은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으로써, 미국으로 선적되기 전에 밀봉 포장 식품 제조시설 및 공정 과정을 등록해야 한다.

③ 아이스크림

식품 내 알레르기(allergy)를 유발하는 물질(major food allergen)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 알레르기 Labelling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콩가루가 포함된 아이스크림에 표기를 누락하여 수입하였다가, FDA에서 이를 적발, 회수·폐기 처분하였다.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조개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등이다. 또한, FDA에서는 제품에 땅콩 자체가 함유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제품을 생산한 공장에서 땅콩을 원료로 다른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내용도 표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④ 자외선 차단제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전에 제조업체는 미리 FDA에 일반의약품(NDC)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한국의 제조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이 거부되었다. 따라서 국가별로 분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국 수출기획 단계에서 이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⑤ 과자류

미국으로 과자류를 수출 시 품명을 한국 상품명 그대로 영어식으로 표기하거나 뜻을 알 수 없는 영어로 번역하여 표기함에 따라 FDA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뽕튀기를 Rice Cracker 또는 Rice Snack이라고 표기하는 잘못된 표기이다. 이는 Rice Crispy 또는 Korean Style Rice Crispy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⑥ 의약품 및 의료기

한국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 관련 기관의 인증 없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Labelling이나 전단지에 효능 또는 치료 효과 문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